

행정자치부

통 보

제 목 무항생제 표시 축산물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부산광역시

내 용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축산물은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고시 2016-75호, 2016.7.29.)」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동 표시 기준 제9조 제1호 가. 5)에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이나 제품명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무항생제 축산물¹⁴⁴⁾의 인증은 농식품부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으로 ‘무항생제’라는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 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무항생제 축산물’은 일반축산물과 동일하게 수의사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및 일반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축산물에 비해 휴약기간¹⁴⁵⁾이 2배 길 뿐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무(無)항생제’의 의미가 아니다.

144) ‘무항생제 축산물’이란 친환경농업법에 따라 인증·관리하며, 질병이 없으면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지 않는 등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의 인증기준을 충족한 축산물을 말함

145)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1.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 절식, 2. 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기간을 준수

따라서 인증표시 형태가 아닌 제품의 명칭에 무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구입하는 소비자는 전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무(無)항생제’) 의미로 오인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관리는 「친환경농업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관장 하고 있으나 축산물의 품목제조보고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있어 ‘무항생제’를 제품명에 사용할 경우 무항생제 원료사용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시·군·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축산물 품목제조보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5개 업체 75개 품목의 식육(포장육, 양념육)제품이 제품명에 ‘무항생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업체에 대하여 무항생제 원료사용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사실¹⁴⁶⁾이 없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통보] 앞으로 ‘무항생제’를 제품명에 사용하는 축산물에 대하여 무항생제 인증 원료 사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46) 이번 정부합동감사 시 부산광역시 ○○○○○과 확인결과 1개 업체 45개 품목은 업체 스스로 제품명칭을 변경하였고, 1개 업체 24개 품목은 현재 생산하지 않아 반납하였으며, 나머지 3개 업체 6개 품목은 제품명을 변경하도록 조치함